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2867 판결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286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41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선우종합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화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A교회

변론 종결 2018. 10. 25.

판결 선고 2018. 11. 22.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4112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5,150㎡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컨테이너 15㎡에서 퇴거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컨테이너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컨테이너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피고는 2012. 12. 18.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5,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D 또는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ㄹ)부분 토지 15㎡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에 피고의 짐과 간판 등을 가져다놓았다.

3) 원고는 2016. 8. 25.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집행관은 2017. 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본606호)을 집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가건물 외부에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 사건 가건물 안에서는 피고의 서류 등이 발견되었으며, 피고 대표자 E는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 뿐 아니라 D, C도 유치권자로서 같이 점유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7. 4.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485호)을 받았는데, 집행관이 2017. 5. 16. 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가건물에 피고의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E는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또는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가건물을 소유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단독으로 또는 D, C과 공동으로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D 또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인 위 선내 (ㄹ)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전제로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7년경에 양주시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가건물에 보관하던 집기 등을 모두 이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정우철

판사이준구

별지